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14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자 : 박균택 · 김남희 · 김동아
주철현 · 강준현 · 김주영
권칠승 · 맹성규 · 정진욱
조인철 · 김한규 · 안도걸
한민수 · 김원이 · 박 정
박홍배 · 황명선 · 이주희
양부남 · 김기표 · 박희승
박지원 · 안태준 · 김문수
이건태 · 박정현 · 정준호
전진숙 · 허 영 · 정일영
김성희 · 신정훈 · 홍기원
이성윤 · 전은수 · 서영교
임문영 의원(37인)

제안이유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국가적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광주 군공항 부지 약 250만 평을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고, 군 시설 이전과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반도체 생산거점을 조기에 조성할 계획임.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핵심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반도체 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개발·축적되는 핵심기술과 지식·노하우, 공급망 및 생산공정에 관한 중요 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외국정부등이나 해외 경쟁기업이 개입한 조직적 기술탈취는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기술주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임. 미국·영국·대만 등 주요국도 이를 국가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고 형사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현행 기술보호 제도는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산업스파이 범죄의 사전 예방·적발부터 수사·재판, 국제공조, 범죄수익의 환수 및 피해 기업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외국정부가 개입하거나 배후에서 조종하는 행위조차 개인의 일탈이나 단순한 기업 간 기술유출로 취급되어 왔으며, 범죄로 얻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와 범죄수익 환수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기술유출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사범’으로 규정하고,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및 ‘일반 경제이적죄’ 체계를 마련하여 범죄의 배후·목적과 실제 유출 여부에 따른 위험성 및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의 방첩활동과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외범 처벌과 국제공조,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피해 기업의 절차적 참여 보장, 비

밀유지명령 및 장기 공소시효 도입 등 실효적인 형사절차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전보장 및 기술주권을 두텁게 수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핵심산업정보”, “외국정부등”, “외국법인등”, “침해행위” 및 “산업스파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적용 대상을 구체화함(안 제2조).
- 나. 국가핵심산업정보의 국외 유출 방지 및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에 대한 사법적 구제 지원을 위한 국가 및 법무부장관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다. 국외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산업스파이 범죄를 배후에 따라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일반경제이적죄’로 나누고, 침해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형량을 차등화하여 범죄 중대성에 비례하도록 가중처벌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마. 미수범을 처벌하며, 예비·음모한 자를 처벌하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바.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도 중하게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명문화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국가핵심산업정보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사기관의 압수물 선별 절차에 참여하고,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함(안 제13조).

아. 경제간첩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해당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함(안 제14조).

자. 소송절차 중 정보 누설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명령 제도와 증인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근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국제공조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차. 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수사기관의 방첩활동 및 조사 권한을 명시하고, 신고 의무, 신고자 불이익 금지 조항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스파이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그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핵심산업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로서,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고 유출되거나 훼손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방위산업 기술 보호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지정·고시하는 기술에 관한 정보

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국가에서 선정한 기술에 관한 정보

다. 「대외무역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

급망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 공급망안정품목, 경제안보 품목, 위기품목, 핵심자원 등의 수급 비축 현황, 조달 경로의 취약점 및 공급망 관리 전략에 관한 정보

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시설에 관한 정보

2. “외국정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외국정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나. 외국의 정보기관 또는 군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관이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 지휘·통제를 받는 법인·단체·개인

라.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의 기관을 위하여 계속적 또는 조직적으로 그 지시를 받아 활동하는 법인·단체·개인

3. “외국법인등”이란 외국의 법인·단체 또는 외국인(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과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 지휘·통제를 받는 법인·단체·개인을 말한다.

4.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기망·협박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핵심산

업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국가핵심산업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국가핵심산업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비밀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국가핵심산업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유출
한 국가핵심산업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
게 하는 행위

다. 국가핵심산업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국가핵심산업정보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라. 국가핵심산업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국가핵심
산업정보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해당
국가핵심산업정보 보유자로부터 국가핵심산업정보에 관한 문
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나 원시코드 등의
반환이나 국가핵심산업정보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국가핵심산업정보를 취득·사용·공개하거나 국가핵심산업정보
를 취득한 후에 그 국가핵심산업정보에 대하여 가목부터 라목
까지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국가핵심산업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5. “사실상 지배 또는 지휘·통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인·단체·개인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과반수 보유

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결정권 행사

다. 자금·기술·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경영상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

6. “산업스파이”란 외국정부등 또는 외국법인등을 위하여 국가핵심산업정보에 대한 침해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핵심산업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경쟁기업을 이롭게 하는 불공정한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소추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범죄 신고자 및 증인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해외 경쟁기업의 부당한 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

내 기업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 및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의 벌칙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죄가 「형법」 제98조 또는 제98조의2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에 따른다.

제5조(국외범)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6조(경제간첩죄) ① 외국정부등의 이익을 위하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외국정부등의 이익을 위하여 제2조제4호마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8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7조(경제이적죄) ① 외국법인등의 이익을 위하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8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외국법인등의 이익을 위하여 제2조제4호마목 및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8조(일반 경제이적죄)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가핵심산업정보가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2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9조(미수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조(예비·음모)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인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의 위반행위: 200억 원 이하의 벌금
2. 제7조의 위반행위: 100억 원 이하의 벌금
3. 제8조의 위반행위: 80억 원 이하의 벌금

제12조(몰수·추징)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몰수·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3조(국가핵심산업정보 보유자의 의견진술 등) ① 이 법에 따른 죄의 대상이 된 국가핵심산업정보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가핵심산업정보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수사기관의 압수물(전자정보 포함) 선별 및 분석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국가핵심산업정보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국가핵심산업정보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제14조(공소시효의 특례) 제6조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5년으로 한다.

제15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른 죄에 관한 소송절차에

서 그 사건과 관련된 국가핵심산업정보가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대리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증인 등에 대한 신변보호) 수사기관, 검사 또는 법원은 이 법에 따른 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증인 등의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국제공조)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 정보의 교환, 수사의 협조, 그 밖의 국제공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공조에 관하여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8조(방첩활동 및 조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방첩활동을 하거나 그 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 의무 등) ① 국가핵심산업정보를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기업, 연구기관, 단체 등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상·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0조(포상금)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죄의 신고 또는 그 검거에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하여지는 침해행위부터 적용한다.